

[번역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유통경로 내 정보 제공 및 영업비밀 보호

법무법인 세종의 김현아 변호사, 황백림 변호사 및 Mayer Brown의 Jean-Philippe Montfort, Heng Li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동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따른 영업비밀 보호가 하위사용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화평법과 관련하여, 보고 제도, 법 적용 기준 용량 및 중간체·고분자에 대한 법적용 여부 등 일부 핵심적인 요소에 관한 논의는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나 유통경로 내 정보 제공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논의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화평법은 EU REACH와 차이가 있으므로, 기업들, 특히 하위사용자에 해당하는 회사들은 2015. 1. 1. 시행되는 새 법률에 대비함에 있어서 그러한 차이점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 언급된 바와 같이, 화평법 및 그 하위법령은 EU REACH와 달리 하위사용자가 화학물질의 용도를 공급자에게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보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화평법은 EU REACH의 해당 규정들에 비하여 매우 제한적입니다.

화평법 및 그 하위법령은 EU REACH와 마찬가지로 공동제출을 통한 기존화학물질의 등록(2014. 5. 19.자 Asia Hub 참조), 유해우려물질의 승인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EU REACH와 달리 화평법은 사전등록 또는 SIEF제도 대신 연간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매년 해당 물질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평법과 EU REACH의 또 다른 차이점은 1톤 이상의 모든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당국이 우선적으로 지정하는 물질에 한하여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EU REACH상 EU의 감독기관에 비하여 한국 정부당국은 화평법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 평가에 있어서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합니다.

2013. 5. 화평법이 입법된 이후 2015. 1. 1. 화평법의 시행을 위하여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014년 봄, 업계의 관련 단체들은 화평법상 규제의 일부 요건을 명확히 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관한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화평법에 따른 유통경로 내 정보 제공

EU REACH는 화학물질 제조자들은 물론 하위사용자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경로 내 참여자들 간의 정보 제공은 EU REACH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이러한 점은 화평법의 경우도 동일하며, 화평

법도 다음과 같이 유통경로 내 정보제공에 관련된 많은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및 기존화학물질(그 자체 혹은 혼합물의 형태)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이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화평법 제8조), 이때 보고 사항은 보고의무자에 관한 정보 및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자료, 화학물질의 용도와 양 등을 포함합니다(시행규칙안 제6조). 다만 판매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내용 및 용도를 모르는 경우 해당 정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평법 제10조에서는 신규화학물질(법적용 기준 물질용량 제한 없음) 혹은 연간 1톤 이상의 등록 대상으로 지정된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판매자 제외)에 대해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등록 사항은 화평법 제14조에 규정된 “용도”를 포함합니다.

제조자와 수입자는 보고 및 등록을 위하여 용도에 관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아래 정보의 제공을 하위사용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하위사용자들은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는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화평법 제30조, 시행규칙안 제47조 제1항)

- 사용량·판매량
- 구체적인 용도
- 노출정보; 및
- 안전취급에 관한 정보

제조자·수입자는 동일한 정보를 하위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하위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중에서 사용량·판매량에 한하여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경우 제공대상 정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용도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용도를 포함한 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하위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화평법 제52조 제2항).

이러한 점에서 화평법은 EU REACH와 매우 다릅니다. EU 규정에 의하면 하위사용자는 용도를 공급자에게 공개하여 제조자·수입자로 하여금 이를 등록 내용에 포함하게 하여 해당 용도를 “등록된 용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사용자들은 용도를 비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용도와 관련된 안전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용도와 평가를 European Chemicals Agency(ECHA)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EU REACH 제37조, 제38조).

EU REACH가 이러한 선택권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일정한 화학물질의 용도는 공급자들에게 공개될 경우 침해될 수 있는 적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용도가 화평법 하에서도 보호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설명하기에 앞서, EU REACH와 달리, 화평법에는 하위사용자가 영업비밀인 용도와 관련하여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또한, 유통경로 내 정보제공과 관련한 두 조항에서도 “용도”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역시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즉 등록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을 통하여 양도인 및 등록된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화평법 제29조). 등록된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는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분류·표시, 노출시나리오, 안전취급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시행규칙안 제44조).

마지막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하는 것으로 보고된 제품(EU REACH 하의 “articles”)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 받는 자에게 환경부가 지정한 서식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화평법 제35조). 이때 제공되는 정보는 유해화학물질 등의 명칭, 함량, 용도를 포함합니다(시행규칙안 제56조).

유통경로 내 정보 제공과 관련한 화평법 하의 영업비밀 보호

상기 조항에 따라 유통경로 내에서 전달되어야 하는 정보 중 일부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경우 전달 과정에서 이를 생략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화평법의 일부 조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을 인용하면서, 회사들이 동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아래 링크 참조)¹. 특히, 시행규칙안 제44조 제2항은 화평법 제29조의 양도·양수인 간에 제공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보 중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보호규정이 하위사용자의 정보 제공을 규정한 화평법 제30조, 시행규칙안 제47조 제3항 및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양도·양수인 간의 정보 제공을 규정한 화평법 제35조, 시행규칙안 제56조 제3항, 제55조 제3항에 하의 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보호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해당 물질이 “유해화학물질”이 아닐 것(즉 모든 유해화학물질은 자동적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상은 “구성성분과 함량”에 관한 정보에 한함(즉 용도에 관한 정보는 보호 대상이 아님)
- 보호대상 정보는 아래 설명하는 바와 같이, 영업비밀보호법 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함

위 마지막 요건과 관련하여,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즉 매체, 출판물 등 정보 보유자 외의 출처에서 접근할 수 없을 것)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예를 들면 해당 정보로 인하여 시장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해당 정보의 취득 및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 및 노력이 요구될 것)
- 정보 보유자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 본 비밀유지 요건과 관련하여, 한국 대법원은 많은 판례에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영업비밀 보유자는 직원들의 비밀유지의무, 내부 서류 보전·보안 시스템, R&D 시설에 대한 접근의 제한 등의 광범위한 조치들을 실시하여야 함

그러므로 EU REACH하에서 하위사용자가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용도에 관한 정보를 공급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1.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98%81%EC%97%85%EB%B9%84%EB%B0%80&x=0&y=0#liBgcolor0>

것과 대조적으로, 용도 관련 정보는 위 요건 중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즉 해당 정보는 구성성 분이나 함량에 관한 정보가 될 수 없으므로)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화평법 하에서 하위사용자는 기본적으로 공급자들에게 정확한 용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쟁자가 모르는 특정한 독창적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전자제품 또는 기계 제조자가 해당 용도를 영업 비밀로 평가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공급자에게 보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화평법 제8조 제1항, 제30조 제1항). 물론 제조자는 해당 정보를 공급자에게 제공하면서 비공개약정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자가 위 예에서 전자제품 또는 기계 제조자의 경쟁자를 비롯한 다른 회사들과도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고 다른 잠재적 고객들에게도 해당 물질을 판매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누설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급자는 용도에 관한 정보를 보고 및 등록의무의 이행 과정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정보는 결국 아래에서 설명 드리는 바와 같이 일반에 공개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의 공개의무

실제로 환경부는 화평법 제42조 및 시행규칙안 제61조에 따라 화학물질에 관하여 보유하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는 화학물질의 명칭, 용도, 물리적·화학적 특성,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물론 화평법은 환경부가 보유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일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화평법 제45조, 제8조 제1항 및 시행령안 제33조에 의하면 환경부는 화평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자료보호를 요청하면 15년의 기간 동안 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 보호되는 정보는 영업비밀보호법상의 영업비밀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영업비밀이 되기 위한 비밀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²

다만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이미 공개된 자료이거나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호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화평법 제45조 제1항). 시행령안은 아래의 정보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화학물질의 상용명칭 또는 상품명, 제품의 명칭
- 화학물질의 용도, 제품의 용도에 관한 자료
- 화학물질의 취급시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등 화학물질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 제품의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 화학물질의 사고발생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
-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료

이 중 두 번째 항목에서 화학물질의 용도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에 관하여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영업비밀을 제출한 자가 요청한 영업비밀 보호신청을 환경부가 기각하는 경우, 해당 제출자는 환경부의 기각 결정 후 90일 내에 관할 상급기관에 이의신청 및/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회복될 수 없는 손해발생의 방지를 위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U REACH도 안전 사용에 관한 지침을 포함하여 ECHA가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으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정확한 용도, 기능 또는 어플리케이션”의 공개는 해당 인의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EU REACH 제118조 제2항), ECHA는 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화평법과 하위법령에는 이러한 보호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용도에 관한 정보의 공개는 환경부의 의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

본 기고문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정보제공 의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은 화평법 및 계획 중인 그 세부법령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험을 초래할 것인지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자의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받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내부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항상 가능하거나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비밀정보에 해당되는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대다수의 회사들은 화평법상 요건이 자신들의 영업비밀 공개 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면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회사들은 공급자들과 비공개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정보를 제공하여 각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역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화평법의 하위법령안에 대한 수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정이 가능할까요?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환경부 고시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기본적으로 수정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평법의 영향을 받게 되는 회사들이 하위법령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4년 9월경까지 남은 기간 동안 한국정부기관을 직접 또는 동종업계 단체를 통하여 접촉하여 하위법령들의 수정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조언합니다. 특히,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로서 제외될 수 있는 정보에 구성성분과 함량 외에 용도 등 일정한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시행규칙안에 따른 보고 대상 면제를 확대하고 시행령안에 따라 환경부의 비공개대상에서 특정 영업비밀을 제외하는 것을 제한할 것을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